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.

제133조제1항제2호 중 ““주관시장·군수·구청장””을 ““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관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4조 중 “주관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45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전 화 번 호
	대 표 자	생년월일
	사업소명	담당부서
		담당자
	사업장소	전 화 번 호

폐기물명세	폐기물 고유번호	폐기물발생지	폐기물포장일자
	폐기물 종류 및 특성	포장물의 형태	중량(kg) 및 부피(m³)
	표면선량률(mSv/h)	최대방사선량률(mSv/h)	선량률측정일자
	주요핵종농도(Bq, Bq/g)	총방사능량(Bq)	처리방법

주요고려대상 물질에 관한 사항

처분후 누적 방사능량

처분방법

처분장소(처분구역표시)

처분일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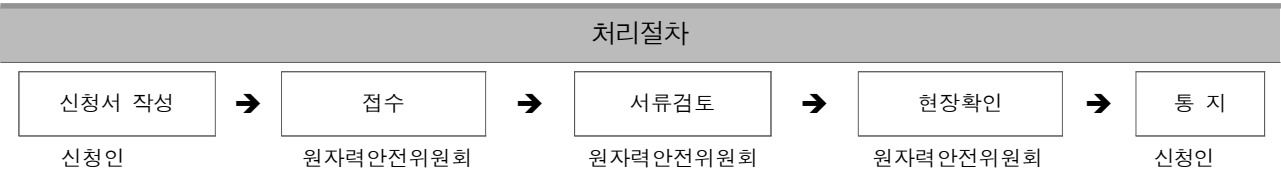
「원자력안전법」 제6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3조(처분검사신청) ① (생 략)	제93조(처분검사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처분 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 96조에 따라 처분요건에 적합함 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 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33조(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 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 출)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 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33조(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 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 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 (이하 “주관시장·군수·구청 장”이라 한다): 20부	2. ----- ---- “의견수렴대상지역 시 장·군수·구청장”----- -----
3. 영 제143조제1항제3호의 자: 10부	<삭 제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	② ----- -----

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<u>주관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에게 알려야 한다. 제134조(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) <u>주관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 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<u>의견수렴</u> <u>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----- --. 제134조(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) <u>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